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 마련〉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6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4.
3. 회부연월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8조의2(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재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¹⁾하고 있으나,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재해보상법」²⁾에 공무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³⁾ 및 「지방자치법」⁴⁾에 각각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의해 취임함⁵⁾. 또한 직무의 특성상 주민과 직접 만날 일이 잦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근무시간 외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에도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직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실제로, 지난해 9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내 화재현장을 확인 하던 중 골절, 화상 등 ‘공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관련 근거규정의 부재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사례⁶⁾도 있음.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법률 제533호 「공무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4)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6) [단독] 일하다 다쳐도 보상 못 받는 지자체장들, 세계일보, 2024.1.9.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9513579?OutUrl=naver>

원연금법」⁷⁾의 시행(1960. 1. 1.)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은 임명직 공무원⁸⁾이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당초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대상이었음.

그러나 이후 지자체장 직선제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 법률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해보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임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보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7)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만 2018년 분법됨.

8) 법률 제501호 「지방자치법」(1958.12.26. 시행)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 읍, 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제98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 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참고로,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2헌마459)의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성이나 국가적 헌신도를 고려할 때, 퇴직수당이나 적어도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한 급여의 적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제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부칙 규정에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외 별다른 부칙 규정이 부재하여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상 손해 등의 경우도 법 시행 후 신청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직무상 손해 등에 한정하여 재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의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4